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권한의 변경, 근거 법조항 개정,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삭 제 : 1건

**<권한 이양 1건 : 도지사 → 시장·군수>**

- (유기농산과) 소규모(10ha미만) 개간사업 환지계획 관련 업무

- 그 밖의 개정사항 : 4건

**<위임사무명 개정 : 3건>**

- (건축문화과)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·보고·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업무

- (균형발전과) 도시계획시설사업 →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**<근거 법조항 개정 : 1건>**

- (건축문화과)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·보고·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업무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권한의 변경, 근거 법조항 개정,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소규모(10ha미만) 개간사업 환지계획 관련 업무(유기농산과)를 도지사에게 시장·군수에게 권한 이양하는 것과
  - 건축문화과 소관 업무 중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·보고·감리 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업무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 중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등 위임사무명을 개정하는 것,
  - 건축문화과 소관 업무 중 근거 법조항 개정을 반영하는 것임.
- 이 개정조례안은 위임권한의 변경, 근거 법조항 개정,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